고용노동부	보 도 자 료	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6. 28.(화) 석간 2022. 6. 28.(화) 10:00	배포 일시	2022. 6. 28.(화) 10:00
담당 부서	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	책임자	과 장 송유나 (044-202-7064)
		담당자	사무관 정혜진 (044-202-7068)
<공동>	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	책임자	과 장 오영민 (044-202-7526)
		담당자	사무관 김승권 (044-202-7529)
<공동>	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	책임자	과 장 오태웅 (044-202-8830)
		담당자	사무관 이도희 (044-202-8835)

▪ 공인노무사 직무 범위 관련 노동관계 법령의 범위에 2개 법률 추가
▪ 진폐심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심사의사 위촉인원 확대

-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 국무회의 심의·의결 -

□ 정부는 6월 28일(화) 국무회의에서 「공인노무사법 시행령」, 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·의결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공인노무사법 시행령 (시행일: 공포일)

☞ **근로기준정책과 소관**

□ **공인노무사** 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**'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'***에 올해 시행된 「**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**」('22.1.27. 시행), 「**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**」('22.6.16. 시행)이 **추가**된다.

* 「공인노무사법」은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를 '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'에서 열거적으로 규정

○ 이에 따라 관련 **신설제도의 원활한 산업현장 안착**과 **근로자 지원**을 위한 **공인노무사의 역할**이 **명확**해진다.

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시행일: 공포일)

☞ **산재보상정책과 소관**

□ 근로복지공단의 **진폐심사회의**는 1회 회의 시 **5명의 전문의**가 참여*하여 **약 3시간에 140여 건을 심사**함에 따라 진폐단체로부터 **심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비판**을 받아왔다.

* 진폐 심사 의사 위촉 인원 15명 중 5명으로 심사회의 구성 운영

□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**진폐심사 의사 위촉 인원**을 기존 15명에서 **45명으로 확대**했다.

○ 이를 통해 진폐심사회의를 **월 8회 이상(현재 4~5회) 확대 개최**가 가능함에 따라 판정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